교육만족도조사 규정

□ 제정 : 2019. 6. 18.
□ 개정 : 2020. 3. 13.
□ 개정 : 2023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만족도 조사의 계획수립, 시행, 분석, 환류에 이르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교육만족도 조사란 본교가 제공하는 유형, 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, 우수한 부분은 계승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교육수요자로는 본교의 재적생, 졸업생, 교원, 직원을 비롯하여 산업체, 학부모, 수험생, 지역사회 등 본교의 교육 및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.

제3조(담당)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획처 평가팀(이하 "담당부서"라 한다)의 주관 하에 대학자체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정한다.

제4조(업무) 교육만족도 조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 계획안 수립
2. 설문문항 등의 조사 평가도구 개발
3. 조사 실시
4.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
5. 기타 조사 관련 필요한 사항

제5조(계획수립)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조사의 목적
2. 조사시기와 일정
3. 조사 대상
4. 조사 방법
5. 조사 내용

제6조(조사대상 및 시기) ① 위원회는 본교의 재학생과 졸업생, 산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조사대상의 범위를 정한다.

② 조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보고)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제고방안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결과의 활용) ① 담당부서는 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, 대학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총장이 교무위원회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을 해당부서에 명하면, 해당부서는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조치 결과를 수집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